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을 포함하고 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실험·실습 및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관련법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호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HSUIACUC : Hoseo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본 대학의 동물실험시설을 사용하는 본 대학 소속의 교직원 및 연구활동종사자(연구보조원등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 조사, 검정 · 검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다른 기관에 속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 8. 26.)
2. 본 대학 내 실험동물의 생산 · 도입 · 사육 · 관리 · 실험 · 이용 · 사후처리 (개정 2024. 8. 26.)
3.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시설

제3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총장 직할 기구로 설치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 장비 · 장소 · 비용 등을 제공한다.
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동물실험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총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⑥ 총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8. 26.)

⑦ 총장은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 8. 26.)

⑧ 총장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8. 26.)

⑨ 총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6.)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동물보호법」제5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 8. 26.)
   가.「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 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나.「동물보호법」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라.「수의사법」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 8. 26.)
   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 8. 26.)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 · 법학 또는 동물보호 ·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 ·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모든 위원은 위원회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동물의 보호 · 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 8. 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회의 안건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8. 26.〉
5.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④ 〈삭제 2024. 8. 26.〉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8. 26.)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생산, 도입, 관리, 실험) · 종료(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동물보호법」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 · 감독
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5.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7.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④ 〈삭제 2024. 8. 26.〉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동물실험계획 심의 · 승인 현황
2.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미비점 개선 방안
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 · 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⑥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감독 · 평가 및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6.)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기관 내 전임수의사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6.)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8. 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제9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①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 시작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
2. 운영지침 별지 제4의1호 서식 교육(실습)·훈련용 동물사용 승인신청서
3.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
4.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호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8. 26.)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④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8. 26.〉

제10조(동물실험계획의 변경) ①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8. 26.)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의 변경
2.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3.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
4. 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5. 진정·진통·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 경
6.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7.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8.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9.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6.)

1.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
2.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
3.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조신설 2024. 8. 26.]

제11조(동물실험계획 심의 · 승인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10. 〈삭제 2024. 8. 26.〉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 · 훈련 이수 여부
12.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동물실

험계획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8. 26.)

③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은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조변경 2024. 8. 26.]

제13조(동물실험수행)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호서대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호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변경 2024. 8. 26.]

제14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 · 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변경 2024. 8. 26.]

제15조(불만사항 처리 등) ① 위원회는 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고충과 불만사항을 기관 내 종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6.)

② 위원회는 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요구받는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기관 수의사에게 동물실험을 중지시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1. 〈삭제 2024. 8. 26.〉
2. 〈삭제 2024. 8. 26.〉
3. 〈삭제 2024. 8. 26.〉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불만사항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증명은 법률 또는 기관별 규정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적절하고 올바른 교정을 위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④ 〈삭제 2024. 8. 26.〉
⑤ 〈삭제 2024. 8. 26.〉

제16조 〈삭제 2024. 8. 26.〉

제17조(심의 후 감독)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 중지 또는 제한적취소 또는 전체취소
④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총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⑦ 총장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제5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조신설 2024. 8. 26.]

제18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6.)
② 위원회는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점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4. 8. 26.)
④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조변경 2024. 8. 26.]

제19조(수당)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조변경 2024. 8. 26.]

제20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변경 2024. 8. 26.]

제21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동물보호법」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 타법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26.)
[조변경 2024. 8. 26.]

제22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조변경 2024. 8. 26.]

제23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조변경 2024. 8. 26.]

부 칙

① **(이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이전에 본 대학 내 부서에서 시행하였던 규정을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통합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